

2018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3

기부금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기부금단체의 대응방안

서희열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연구자



서희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최근 주요경력

-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 (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연구실적

- 음성·탈루소득의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
-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
- 국세심판제도의 평가와 장단기 개편방안 등 120여편

기부금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기부금단체의 대응방안

서희열(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정부는 2018년 1월 1일자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여(2020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적용 유예) 앞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을 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역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소득공제 제도'로부터 '세액공제 제도'로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부금 총액이 상당히 축소된바 있다.

또한 수원시 소재 주간지에 대한 증여세과세 소송문제로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문화 활성화나 정착화도 되어있지 않는 바 최근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기부금 제도를 더욱 강화·규제함으로써 앞으로 기부문화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행 세법중 기부금 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내용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제1절 기부금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가.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35①(1)).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것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인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법령상 지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구분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분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나. 기부금의 요건

1)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기부

기부금이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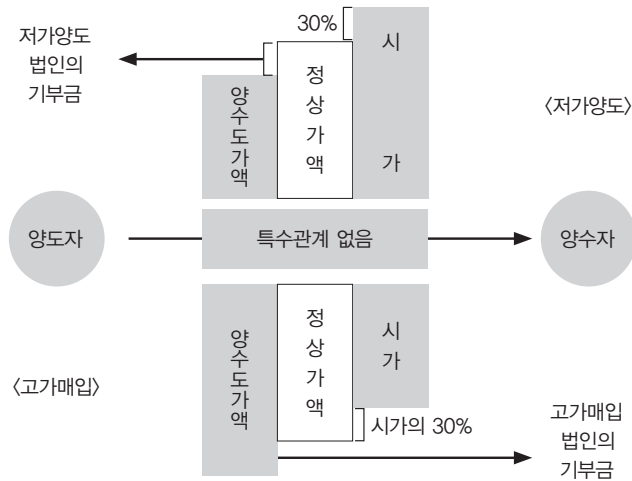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5 (2)). 이는 의제기부금 또는 간주기부금이라고 하며,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를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기부금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만일 특수관계인과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이루어지면 의제기부금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바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처에 따라서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이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 단체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법기통 24-36...6).

〈그림 1〉 의제기부금 도해



2) 사업무관성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따라서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¹⁾.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무관성은 기부금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기부금,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무상지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1)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 및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유무의 판단기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참조.

〈표 1〉 기부금·접대비·공과금 및 광고선전비 비교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임의성	
공 과 금	업무와 관련된 지출	강제성	
접 대 비		특정고객에 지출	임의성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 지출	임의성

3)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의 가액

기부금은 기부자가 수증자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수여받아야 하는 무상성의 특징이 있다. 여기서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무상 지출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기부자의 재산은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은 증가한다.

또한 기부는 재산을 직접적으로 무상 증여하는 방법 이외에 채무면제,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변제, 무이자부의 자금대여, 무상의 임대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도 포함된다. 또한 자사의 고가양수나 저가양도 등을 통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또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4) 자발적 의사

기부자의 기부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부의 자발적 의사의 특징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과금²⁾과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 즉, 공과금은 납부자가 법률에 의하여 납부가 강제되지만, 기부는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적 가액의 무상지출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고 행정관청 등의 권유나 종용,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적 지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의 회비 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회비 및 영업자가 조직한 조

2)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요금과 국세인 종합 소득세, 증여세, 갑근세 등이 있다(금성출판사, 『한국국어사전』, 2013, p.146). 즉, 이와 같은 공과금은 법률에 의하여 납부가 강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합이나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5①(3)).

2.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은 크게 증여, 유증, 채무면제, 채무인수, 채무의 제3자 변제, 혼합증여, 용역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³⁾. 따라서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주는 행위이지만, 증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받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승낙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재산이란 물건⁴⁾, 채권⁵⁾, 무체재산권⁶⁾ 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재산이 계약 당시 반드시 증여자에게 속하는 소유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인의 재산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면 증여가 된다.

재산의 수여란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수여의 구체적인 형태는 동산, 부동산 및 채권 등의 양도와 타인의 채무 변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 채무 변제 등이 있다.

증여계약 체결되면 증여자는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일정한 재산(증여의 목적물)을 수증자에게 수여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수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자는 재산원의 이전이 증여계약의 목적인 경우 중국적으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만약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행지체 및 그 밖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민법 제554조 참조.

4)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4, p.479).

5)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송덕수, 전게서, p.915.).

6)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송덕수, 전게서, p.35).

그러나 증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한 해제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때 셋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등이다.

나. 유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무상증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사인행위이기 때문에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 증여와 다르고,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이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하거나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유증에 포함이 된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의 유증을 말하며, 특정적 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다. 유증은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며, 기부자가 법인이라면 유증이 있을 수 없다.

다. 채무면제

채무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채무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표시로 하며,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또한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조건을 붙이더라도 채무자를 특히 불이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면제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라.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인수

7) 민법 제560조 참조.

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⁸⁾와 구별하기 위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의 유형은 채권자와 제3자간의 계약⁹⁾과 채무자와 제3자간의 계약¹⁰⁾의 두 가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3면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범위에 이와 같은 채무인수도 포함될 수 있다.

마. 채무의 제3자 변제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도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변제는 본래의 변제, 대물변제나 공탁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변제가 제3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증여로서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에 의한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채무의 제3자에 의한 변제는 제3자가 증여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혼합증여

혼합증여란 증여와 매매 기타 유상계약이 결합하여 일체를 이룬 계약을 말한다. 즉, 당사자 일방의 급부 중 그 일부만 대가관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무상으로 주어진 경우 그 무상으로 주어 부분에 대하여 증여의 합의가 있는 계약이다. 저가매매와 같이 매매계약으로 물건을 팔지만, 일정한 부분만큼 싸게 파는 경우가 혼합증여에 해당한다.

혼합증여는 법적 성질에 따라 일체설, 분리설, 목적가치설로 구분된다.

일체설은 혼합증여계약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계약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8)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을 말한다.

9) 민법 제453조 참조.

10) 민법 제454조부터 제457조 참조.

유상부분의 계약과 무상부분의 계약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분리설은 혼합증여계약이 비록 유상부분과 무상부분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형계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와 급부의 사실상의 가치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목적가치설은 유상부분과 무상부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규정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계약의 목적 속에 객관화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견해이다.

혼합증여로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유상과 무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무상으로 주어진 부분)은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 용역기부

용역기부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가액을 의미하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하고 있다¹¹⁾. 즉, 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만을 용역기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용역기부는 기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제2절 기부금 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단체 현황

우리나라의 기부금단체는 크게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조세 혜택에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개인 기부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게 되며, 법인 기부자의 경우 손금산입의 조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기부금 단체의 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였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세청의 기부금단체에 대한

11)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관리는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횡령이나 기부금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 등의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¹²⁾.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및 비영리교육재단(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을 기부받는 경우에 한함) 등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종교단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작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복지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부금단체로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2〉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정기부금단체

구 분	지 정 대 상	관련 법령
지정기부금단체	「민법」 상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령§ 36 ① 1호 바목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법§ 24② 4호(자목),6호,7호 법령§ 36의2 ③,④,⑤

→ 지정기부금단체 확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12) 2013년 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결산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 · 지정절차 · 지정기간 · 지정취소

가. 지정요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 ②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 ③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정관상 기부금 모금 ·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
- ④ 지정 연도와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개정전 : 5년→3년)
- ⑥ 삭제(개정전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나. 지정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은 2018. 4. 1. 이후 지정분부터 적용한다.

다.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라. 지정취소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단, 가산세 포함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해산한 경우

4.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현행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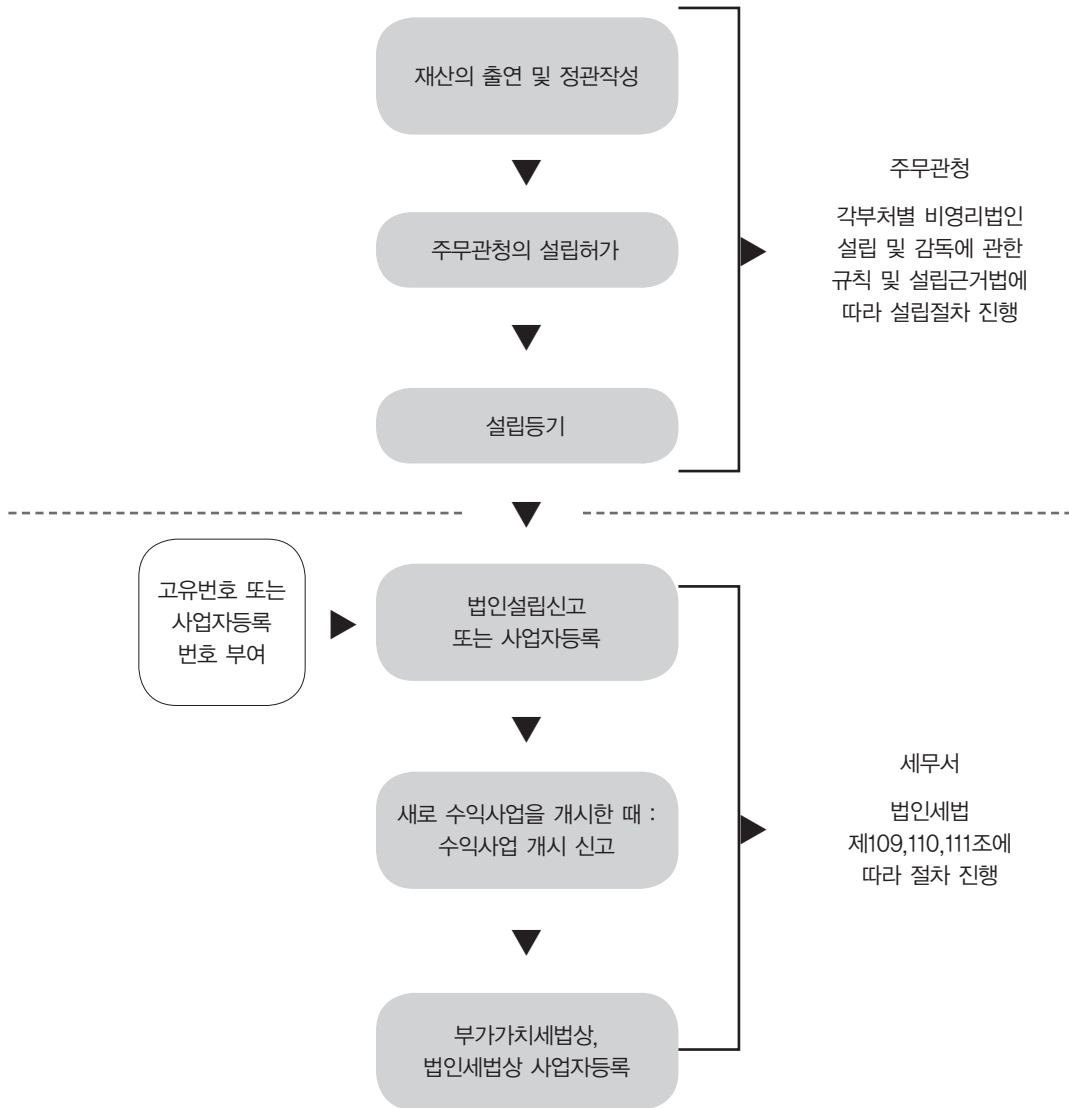
- ①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
-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③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미공개
- ④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 ⑤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 위배
- ⑥ 지정요건 중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 정관상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미충족
- ⑦ 상속·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되거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다만, 가산세 합산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절차 및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그림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절차 및 사업자등록 절차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

주무관청	소관 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형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童)·유아 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주무관청	소관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7.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한다.

〈표 4〉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주무관청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중앙과학관장(그외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청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수산 및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8.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

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다.

다. 법인세법상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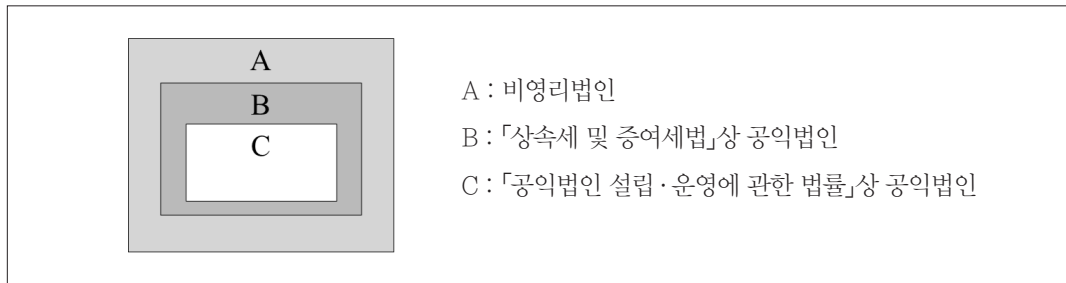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9.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그림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10.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표 5〉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공익의 유형	설립근거법
종교	「민법」, 기타 특별법 등
학술, 장학, 자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의 유형	설립근거법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사립학교법」 등
의료	「의료법」
문화 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민법」, 기타 특별법 등

제3절 기부금 제도의 세법상 규정

1.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도 변천

가. 법정기부금 제도의 변천

1962년 정부는 국방헌금, 흉병금¹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기술진흥기부금, 운동기능향상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법정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하였다.

이후 2006년 법인의 손비인정한도를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월공제를 1년으로 제한하였다. 2010년에는 법인의 손비인정한도를 기존 75%에서 50%로 다시 하향조정함으로써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2011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통일¹⁵⁾하였으며, 전문 모금기관에 대한 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도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 기관에 대한 허용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흉병금(恤兵金)이란 전장의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는 돈을 의미한다.

15) 그러나 개인에 한해 특별재단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기부금 공제)을 허용하였다.

나. 지정기부금 제도의 변천

1974년에는 법정기부금 대상이었던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기술진흥기부금, 운동기능향상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복지법인, 국립 및 공립학교, 사립학교 시설비·교육비 및 연구비,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등의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을 하였다. 당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5%와 자본금의 1%를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1990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7%와 자본금의 2%를 합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8년 12월 소득금액의 5%로 기부금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였다. 이후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개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로 확대하였다가 2008년도 소득금액의 15%, 2011년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10% 한도)로 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다. 특례기부금 제도의 변천

정부는 1982년 특례기부금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특례기부금은 기존 지정기부금 단체 중 공익성이 크고, 고액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특정 연구단체에 대하여 손금인정 한도를 지정기부금 보다 높게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당시 특례기부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시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였다.

1987년에는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특례기부금 단체를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포함한다) 시설비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하면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특례기부금에 대한 한도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특례기부금 한도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2004년에는 특례기부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지정기부금 단체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문화예술단체 특례기부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례기부금 한도액은 지정기부금 한도액과 소득금액의 3%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작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기부금 제도는 2010년 7월 1일 폐지가 됨으로써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특례기부금단체는 공익성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었다.

2. 법인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가. 기부금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손금한도액의 계산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

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금 인정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이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국가 등에 기부한 자산은 국가 등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손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국가 등에 기증한 금품을 포함하고(법령 38①),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도 포함한다(법기통 24...0...2)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국방헌금이라 함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법령 38②).
- ③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 제외),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⑤ 국립대학 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⑥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전문모금기관:기부금의 모집과 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부금의 모집과 배분실적 및 결산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며 관리·운영비용이 기부금수입금액의 10%이하이고 개별단체 배분액이 총배분액의 25%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보건·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 제외)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법령 36③).

- ① 사회복지법인
-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③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④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상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단체
- ⑤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를 포함)
- 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⑦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⑧ 위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단체 등(국민건강보험공단·새마을운동본부·사내근로복지기금·상생협력기금 등)

나) 특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공익성 기부금

아래와 같은 공익성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①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

정부령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의료시설 및 노인주거시설 등은 제외)·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등은 제외) 등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라) 국제기구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교·자산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된 것 외에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그것이다(법기통 24-36...12).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한편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가장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먼저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타의 기부금들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액의 계산은 다른 모든 세무조정 내용을 전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 후에 계산된 소득금액을 가지고 한도액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다음과 같다¹⁶⁾.

16)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참조.

〈표 6〉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구 분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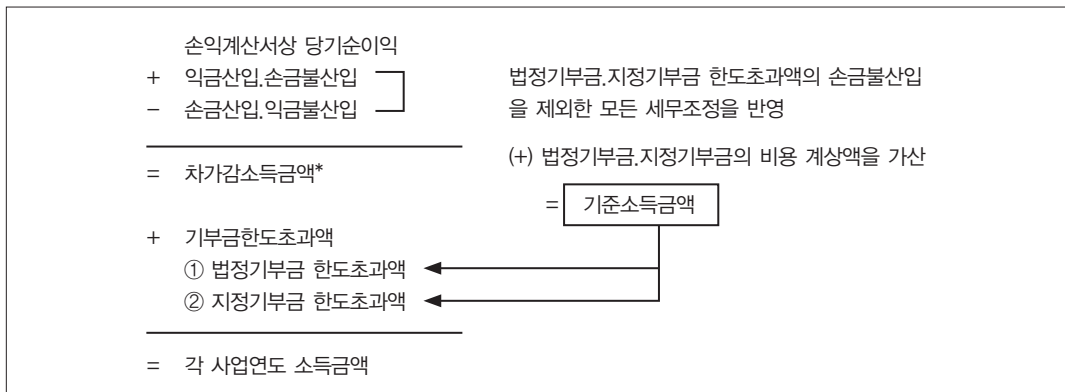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먼저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의제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기부금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상기 기부금한도를 차례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한 한도계산 결과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 상태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지정기부금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에는 전기 이전에 지출된 법정기부금 중 전기 이전에 한도초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한 금액 중 당기로 이월되어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1) 기준소득금액

이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합병시 합병으로 인해서 피합병법인에게 발생한 양도손익 및 분할시 분할로 인해서 분할법인에 발생한 양도손익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비용으로 계상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는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의제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시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을 제외한 차가감소득금액임

2) 이월결손금

위에서 이월결손금이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과 동일하다. 즉,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다. 기부금 귀속시기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고 이를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37②③).

한편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칙 19).

라. 현물기부금평가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37①).

〈표 7〉 현금기부금 평가액

구 분	현물기부금 평가액
① 법정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장부가액
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한편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기부금에 대한 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해당 현물자산의 처분손익으로 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장부가액 100원(시가 300원)인 현물을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

과 시가의 차액 200원을 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기타)하고 동액이 추가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200원(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동액으로 동시에 하게 되므로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통상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기부금한도액 시부인을 하면서 장부상 기부금에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200원을 가산한 금액을 회사의 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상 한도액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조정방법이다.

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당기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만일 20×1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원이 발생하면 20×1 사업연도에는 한도초과액 1,000,000원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20×2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 2,800,000원이 생기면 20×1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원이 2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2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⑩」란에 1,000,000원을 기재함으로써 2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바. 기부금조정명세서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3.2.23>

(앞 쪽)

사업연도	제10기 1. 1. ~ 제10기 12. 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25-81-12345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②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④ 한도액{[(①-②)0]×50%}		⑧ 한도초과액{(③-④)0}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	--

⑨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⑩ 한도액(⑦×50%)		⑬ 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0]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 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⑯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⑮-⑭)>0,]	
⑯ 한도액(⑬×10%)			
⑰ 손금산입액 Min(⑮, ⑯)		⑱ 한도초과액[(⑮-⑰)>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기부금 합계액(③+⑤)	손금산입 합계(⑤+⑰)	한도초과액 합계(㉑)-(③+⑮)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뒤 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㉒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㉓기공제액	㉔공제가능 잔액(㉒-㉓)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㉖차기이월액 (㉔-㉕)
합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작성 방법

1. ①소득금액계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㉔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㉓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㉕ 기부금 합계액(③+⑥)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② 손금산입 합계(⑤+⑦)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2. ③, ⑥란:「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의 ㉑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용합니다. 이하에서 (㉓-㉔)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5.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 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㉕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용합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용합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⑨한도초과액 합계란: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 서식의 ㉖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용합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㉕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㉔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용합니다.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8조에 따라 2011.7.1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소득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가. 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¹⁷⁾(소법 59조의4④).

여기서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한다.

- ① 법정기부금
- ② 지정기부금.

17) 서희열·노병석 저, 「소득세법」, p. 320.

나.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산식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¹⁸⁾.

-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한도액=소득금액×10%+Min
[소득금액×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한도액=소득금액×30%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법정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액=(㉠+㉡-㉢)×15%(30%)
① 법정기부금
②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③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Ⅲ. 우리나라 기부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인사업자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가. 기부금 신고 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부금 신고법인 수는 각각 460,614개 기업, 482,574개 기업, 517,805개 기업, 550,472개 기업, 591,694개 기업, 645,061개 기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법정기부금 총액은 각각 2조 4,233억원, 1조 4,731억원, 1조 7,848억원, 1조 7,999억원, 2조 234억

18) 서희열·노병석 저, 「상계서」, p 321.

원, 1조 4,09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1년을 제외한 2015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6년에 법정 기부금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조 6,446억원 2조 6,391억원, 2조 8,696억원, 3조 1,063억원, 2조 7,546억원, 3조 2,3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기업의 기부금 합계액은 각각 4조 680억원, 4조 1,122억원, 4조 6,544억원, 4조 9,062억원, 4조 7,782억원, 4조 6,47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부금 합계로 보면 법인 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신고법인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기부금 신고법인 및 기부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평균기부금액(원)
2011년	460,614	2,423,360	1,644,685	4,068,045	8,831,787
2012년	482,574	1,473,145	2,639,131	4,112,276	8,521,544
2013년	517,805	1,784,892	2,869,602	4,654,494	8,988,893
2014년	550,472	1,799,954	3,106,338	4,906,292	8,912,882
2015년	591,694	2,023,522	2,754,680	4,778,202	8,075,461
2016년	645,061	1,409,470	3,237,686	4,647,156	7,204,211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나.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부금을 신고한 기업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이 127,433개 기업이고, 중소기업이 517,628개 기업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일반기업이 1조 2,528억원이고, 중소기업이 1,56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일반기업이 2조 7,752억원이고, 중소기업이 4,62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부금 신고를 한 기업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중소기업의 기부금 규모보다 월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922개의 상장기업은 법정기부금 6,683억원과 지정기부금 1조 5,280억원을 기부하여 총 2조 1,86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상장 기업은 643,139개 기업이며, 비상장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7,511억원과 지정기부금 1조 7,096억원으로 총 2조 4,608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차이가 큰 편이 아니나,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기부금의 규모는 크게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구 분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원)	평균 기부금액(원)
규모별	일반기업	127,433	1,252,877	2,775,217	4조 280억원	31,609,504
	중소기업	517,628	156,593	462,469	6,190억원	1,195,959
상장 여부	상장	1,922	658,333	1,528,011	2조 1,863억원	1,137,535,900
	비상장	643,139	751,137	1,709,675	2조 4,608억원	3,826,252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다.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금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은 53,256개 기업이며, 기부한 기부금은 총 4,1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손금 1천만원 이하인 기업도 100,728개 기업이며, 기업의 기부금은 2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577개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3조 123억원이다. 소득금액이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기업은 787개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2,2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소득금액이 결손인 기업도 기부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금액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소득금액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1억 이하	53,256	144,911	265,914	410,824
-1천만 이하	100,728	3,955	22,667	26,622
0 이하	88,043	1,035	4,782	5,816

소득금액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1천만 이하	70,492	2,753	4,273	7,026
5천만 이하	119,071	6,974	24,912	31,886
1억 이하	63,459	8,102	31,856	39,957
2억 이하	58,659	12,641	51,802	64,442
5억 이하	50,430	21,783	99,283	121,065
10억 이하	19,216	28,530	77,944	106,474
20억 이하	10,120	25,822	69,132	94,955
50억 이하	6,600	52,022	118,071	170,093
100억 이하	2,346	61,226	85,228	146,454
200억 이하	1,297	44,928	140,661	185,590
500억 이하	787	43,371	180,218	223,589
500억 초과	557	951,418	2,060,946	3,012,364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2.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가. 기부금 신고 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각각 662,523명, 860,547명, 852,556명, 104,627명, 16,200명, 7,162명이며, 같은 기간 특별소득공제액계는 각각 1조 7,452억원, 2조 254억원, 2조 371억원, 4,369억원, 1,244억원, 83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기부금특별세액 신고인원이 각각 435,360명, 462,693명, 385,058명이며, 세액공제계는 747,832억원, 947,802억원, 949,71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기부금특별소득공제		기부금특별세액공제	
	신고인원	소득공제액계	신고인원	세액공제계
2011년	662,523	1,745,299	-	-
2012년	860,547	2,025,424	-	-
2013년	852,556	2,037,163	-	-
2014년	104,627	436,966	435,360	747,832
2015년	16,200	124,454	462,693	947,802
2016년	7,162	83,995	385,058	949,712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나.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종합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는 185명이며, 종합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3억 52백만원으로 1인당 19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12,953명이며,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65억 17백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58,969명이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1,958억원으로 1인당 322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납세자(11,763명)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620억원이며, 1인당 기부금은 약 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7,274명)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2,777억원이며, 1인당 평균 3,818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평균 기부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없더라도 기부를 하는 기부자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는 종합소득자가 기부를 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종합소득	신고인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평균
0	185	352	1,903
1천만 이하	12,953	6,517	0.503
2천만 이하	40,355	31,242	0.774
4천만 이하	91,049	97,953	1.076
6천만 이하	69,133	104,410	1.510
8천만 이하	54,624	106,790	1.955
1억 이하	38,300	94,230	2.460
2억 이하	58,969	195,880	3.322
3억 이하	11,763	62,063	5.276
5억 이하	7,615	56,501	7.420
5억 초과	7,274	277,769	38.187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가.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¹⁹⁾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19) 법인세법 제2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 20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 단체 등은 20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나.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²⁰⁾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사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 * 2018. 2. 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²¹⁾

- 신청시점에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 개선(개정전 :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
 - 지정요건에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하여 사후관리 요건으로 이관
 - * 2014. 2. 2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강화²²⁾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정비(위반시 지정취소)
 - 2014. 2. 2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다만,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의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는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참조.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마.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²³⁾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단,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바. 기부금단체의 추천·지정시기 조정²⁴⁾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조정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일화 (1·4·7·10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를 매분기 말일로 단일화 (3·6·9·12월)
* 2018. 4. 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²⁵⁾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장소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 (기존)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 (개정)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아.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시기 변경²⁶⁾

- 공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2019. 1. 1. 이후 공개분 부터 적용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2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자.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지정취소 업무²⁷⁾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건의는 국세청장, 지정취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
 - (개정전) 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
 - * 2014. 1. 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취소대상임을 통지
 - 주무관청 및 해당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시 가능
 - * 2016. 1. 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차.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및 사후적발시 지정취소 근거 신설²⁸⁾

-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개정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적으로 지정취소 사유 적발시에는 재지정 거부할 수 있다
 - * 2014. 1. 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²⁹⁾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5%(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 * 2017.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참조.

나.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³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 적용 제외
 - * 2017.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 주식보유기준 조정³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 조정
 - * 20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 20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라.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³²⁾

- 주식 5%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³³⁾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주식 10% ~ 20%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화
 -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미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참조.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78조 제9항 참조.

33) 성실공익법인이란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실공익법인이 된다.

- 1) 외부감사를 받을 것
- 2)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3)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 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5)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 6)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7)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말 것
- 8) 전단에 따른 광고나 홍보를 하지 말 것

마.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³⁴⁾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5년주기)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 * 2018. 2. 13. 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 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³⁵⁾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별지 1호 서식) 제출하도록 의무화(중전, 면제)
 -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중전, 가산세 면제)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보유한다 20%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행사시 10%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³⁶⁾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도 공시
 - * 2017. 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분부터 적용

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³⁷⁾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7. 12월 제정)을 적용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 참조.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제7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참조.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3항 참조.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4조 참조.

계기준(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학교법인의 회계기준 규칙) 적용 가능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자.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³⁸⁾

-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 }의 공익법인등 및 종교 단체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선택에 따라 자율공시(자율서식)할 수 있다

* 2014. 2. 21.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차.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규정 구체화³⁹⁾

-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이사수의 1/5 이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2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 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으로 구체화

* 2016. 2. 5.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연장⁴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설정 가능

- 손금산입 범위 확대(수익사업 소득의 80% → 100% '14년부터 적용)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 별지 제31호의2 서식 참조.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8조 참조.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참조.

-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2016. 12. 31. → 2019. 12. 31.)

나. 기부장려금제도 신설⁴¹⁾

-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하는 기부 장려금 제도 도입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기부 장려금 단체에 그 기부금의 100분의 15(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부장려금 환급
 -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
 - 기부금단체가 매년 5, 11월에 국세청에 신청 (2016년의 경우 3월 추가)
 - * 2016.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⁴²⁾

- 공익단체인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
- * '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기본법 관련

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⁴³⁾

41)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4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참조.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⁴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의무 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⁴⁵⁾

-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로 통일
- * 공포일(2016. 2. 5.) 이후 명단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결산서류 등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상세화,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변경

- 2014. 1. 1.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하는 서식을 상세화 하였으며, 기존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홈택스서비스로 통합하여 운영
 - 결산서류 등 공시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는 (재)한국가이드스타 사이버연수원 (<http://guidestar.hunet.co.kr>),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공익법인] 링크 활용

44)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 ①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증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②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③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④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 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이 규정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참조.

- (기존) <http://npointo.hometax.go.kr> → (현행)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공익법인공시] _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_ [공시의무자 또는 자율공시 대상자]
- * '15. 3월 공시하는 법인부터 적용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시스템 개발·운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중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 실적이 있는 기부금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다음 사업연도 3. 31. 까지 공개해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기부금 공개 시스템을 추가 구축·운영
 - <홈택스서비스> [공익법인공시] _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_ [국내지정 기부금 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또는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 * 2015. 3월 공개하는 법인부터 적용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입력·제출 시스템 개발·운영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 1. 1. 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시스템 추가 구축·운영
 - <홈택스서비스> [신고/납부] _ [일반신고] _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신고 시스템 경로 변경

- 기존 홈택스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한 현행 홈택스서비스 '15. 2월말 개통·운영
 - <홈택스서비스> [신고/납부] _ [일반신고] _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1. 세법개정 내용의 강화·완화 분석에 따른 적극적 대비

각 기부금단체마다 세법개정 내용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지정기부금단체의 강화·완화 분석표 참조

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3〉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기부금단체 범위조정	1. 어린이집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2018.2.13 이후 (학술단체 등은 2021년 부터)
	2. 공공기관을 법정단체에서 지정단체로 변경	○			
	3. 학술연구·장학 등 단체를 당연지정단체 에서 지정심사후 단체로 변경	○			
	4. 기타 지정단체와 유사한 단체를 지정심사후 단체로 변경	○			
나.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	1.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등 제외	○			2018.2.13 이후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			2014.2.21 이후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요건 강화	1.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요건 강화	○			가산세부과는 2019년부터
마. 기부금단체의 의무강화	1.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개설·사용	○			2019.1.1이후
바. 추천·지정시기 조정	1. 추천시기 조정		○		2018.4.1 이후 2018.4.1 이후
	2. 지정시기 조정		○		
사.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1.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2014.1.1이후
아. 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시기 변경	1. 모금 및 활용실적공시시기 변경		○		2019.1.1 이후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자. 사후관리, 지정 취소업무 부서 변경	1. 사후관리, 지정취소업무 부서 변경		○		2014.1.1 이후
	2. 주무관청에 지정취소 대상임을 통지			○	2016.1.10이후
차.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신설	1.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신설	○	○		2014.1.10이후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계산방법보완	1.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보완	○			2017.1.1 이후
나. 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	1. 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			○	2017.1.10이후
다. 주식보유기준 조정	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	○			2017.1.1 이후
	2. 자선 등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조정			○	2018.1.1 이후
라. 성실공익법인의 출연 재산 의무지출 강화	1.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의무지출 강화	○			2018.1.10이후
마.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1.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2018.2.13 이후
바. 투명성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확대	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2017.1.1 이후
	2.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2017.1.1 이후
	3. 의결권 행사시10% 초과 보유분 증여세 부과	○			2018.1.1. 이후
사.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	1.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	○	○		2017.2.7 개시연도
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	○		2018.1.10이후
자.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	1.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	○	○		2014.2.210이후
차.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 기간 부여 규정 구체화	1.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2016.2.5이후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연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	2014.1.10이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일몰연장			○	2016.12.31. → 2019.12.31.
나. 기부장려금제도 신설	1. 기부장려금제도 신설			○	2016.1.1.이후

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 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	2015.2.30이후

마.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7〉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			2019.1.10이후
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		○		2016.2.50이후

바.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지정기부금 단체의 강화·완화 분석

〈표 18〉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공시·공개 시스템 관련	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상세화,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변경		○		2015.3.10이후 공시법인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공시·공개 시스템 관련	나.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시스템 개발·운영	○			2015.3월 공개법인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입력·제출 시스템 개발·운영		○		2014.1.10이후
	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신고 시스템 경로 변경		○		2015.2월 개통·운영

2. 불성실 기부금 단체 정의 숙지

불성실 기부금 단체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숙지하고,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낙오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절차·기간·취소 사유에 대한 대비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절차·기간·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을 엄밀히 분석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한다.

4.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대한 대비절차

성실공익법인 8가지 요건을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한다.

5. 학술연구단체 등의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로의 세법 재개정 제안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이 확정되

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학술연구단체인 학회가 약 8,000개가 학술활동을 있는바, 사실 대부분의 학회들은 유급 사무국간사가 없어 학회장등 및 몇 임원들이 학회행정을 하고 있다.

이번에 학술연구단체 등의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후 단체로 변경되어, 앞으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바 대부분의 학회가 학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견된다. 따라서 세법개정전으로 다시 환원하는 재개정이 요구된다.

Ⅵ. 결론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범적인 기부모델의 주체가 될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특히 부유층)의 솔선수범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의 세습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자선적 기부와 부의 사회환원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원(自願)적 기부활동은 사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존중과 명예)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선적 기부를 크게 하는 사회지도층과 부자(기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부금 관련 기관(비영리기관 및 자선단체 등)들도 거액 기부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자들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여건, 전문가 등을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부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테마를 개발해야 한다.

일회적·충동적·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제한적 기부 테마에서 벗어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 '자선 카달로그'나 '기부 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선단체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곳에 기

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자선단체의 자료들이 소개되어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기부의 목적과 사용방법을 기부자가 지정하고 기부자 이름을 딴 독자적인 기금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기념하는 기금, 꿈을 이루는 기금, 불치병 어린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금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기부 테마를 만들어 기부자의 기부동기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나눔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제혜택과 학습 및 교육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부하는 사람과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단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진 나라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부에 관계되는 투명함이 전제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민간에 기부할 때와 정부기관에 기부할 때 세율혜택의 균형을 맞춰주어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부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교육도 중요하다. 즉,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살아야한다는 교육은 곧 풀뿌리 기부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2010),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곽윤직(1992), 민법총칙, 박영사.
-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국세청(2018),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 금성출판사(2013), 「학습국어사전」.
- 김성환·김미나(2011),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40권 제3호.
- 김수성·문성훈(2014),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연구」(제3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 김완석, 정지선(2017),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텍스.
- 김완석(2002),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계간 세무사.
- 백운찬(2012),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희열(2001),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연구, 국세청 용역보고서.
- 서희열·노병석(2018), 「소득세법」, 세학사.
- 서희열·성용운(2018), 「법인세법 강의」, 세학사.
- 서희열·심충진·조영탁(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손원익(2000),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2),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세무학회 2002년 동계 세무학 WORKSHOP 교재.
- 손원익·박태규(2013),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신해진·서희열(2013),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3호.
- 신해진(2009),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7), 「제 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7」.
- _____ (2017), 「2017년 기획연구보고서」.
- _____ (2010), 「계획기부(Planned Giving) 도입을 위한 연구」.
- 이상신·박훈(2010),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전병욱(2013), 기업의 한도초과 기부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 (재)한국가이드스타(2014), 「NPO가이드스타」, Autumn, Vol.08.